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방재상담

문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풍량, 풍압과 배연구 및 급기구의 용량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우리 나라 건축법(시행규칙 제 20조)에는 수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공업규격(KSF 2815) 및 일본 건설성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연기 풍량은 최소 $240\text{m}^3/\text{min}$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비를 겸용하는 경우는 $360\text{m}^3/\text{min}$), 풍압은 20mmAq 이상으로 할 것.

2. 모터 내장형의 배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385°C 에 견디는 내열장치를 할 것.

3. 송풍기의 풍량은 최소 $480\text{m}^3/\text{min}$, 풍압은 50mmAq 이상으로 할 것.

4. 배연구에 있어서 자연환기에 의한 경우에는 배연구의 개구면적을 4m^2 이상(단,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비를 겸용할 경우에는 6m^2 이상)으로 하고, 기계배연에 의한 경우에는 서두의 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되 최소 개구면적은 $1,800\text{cm}^2$ 이상으로 할 것.

5. 급기구의 개구면적은 최소 1m^2 이상으로 할 것.(단,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비를 겸용할 경우에는 1.5m^2 이상)

문 : 소화설비규정 중 자동화재경보설비와 수동화재경보설비 할인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자동화재경보설비(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전원 등)가 소화설비할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8%의 할인이 적용되지만 이중 자동설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지기가 동기준에 미달됨으로써 수동화재경보설비로서의 기능

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의 5%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문 : 락크식 창고건물(높이 25m , 바닥면적 $1,400\text{m}^2$)의 적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 : 1. 바닥면적으로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높이가 20m 를 초과하는 장소는 유효하게 화재감지를 할 수 없으므로 동 설비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어서 섬유류 등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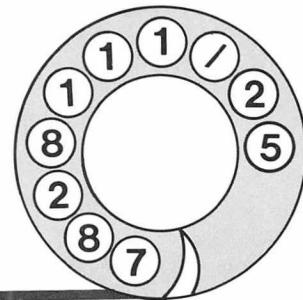
2. 귀 창고의 경우는 면화류등 특수가연물을 선반에 저장하므로 별도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할 필요없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연기감지기에 의한 감지방식 부설)를 설치하되 각 선반 하단마다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창고내 천정, 반자,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 바닥으로부터 높이 4m 이하마다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귀 창고의 경우 각 선반의 하단에 헤드를 부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주방, 대량 화기 취급소 등의 자동확산 소화용구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 1.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설치는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바닥면적 20m^2 이하의 대상물에 한하여 바닥면적 10m^2 당 1개 이상을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2. 주방에 있어서는 가정용 주방을 제외한 영업용 등의 주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상담

▣ 당사는 전용공업 지역에 15만톤 도크를 건설,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업체로서 일반 요식 업및 제조업, 서어비스업체와는 달리 전문 경비용역 업체가 당사 전 외과를 24시간 경비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구역 설치로 외부인의 출입및 접근이 금지되고 있는 바 제 3자인 타인에 대한 보상 만을 규정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로서 보상범위및 약관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타인)에게 신체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 자신의 재물손해와 동거하는 친족등 특수관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되는 종업원의 인명피해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귀사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구내에 있는 용역및 협력업체, 수리중인 선박등 타인소유의 재물과 관련업체 종업원등의 인명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별·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사고의 크기등이 고려되어 보험약관및 요율이 제정되었

으며 3년간 평균 손해율이 40%미만이면 다음 계약 시 보험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 : (주)부산수리조선소 · 응답자 : 기획조정실〉

▣ 당행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건물에 대한 내부공사를 임차인인 당행이 예산을 들여 시공하여 업무용건물 계정에 계상한 경우에, 임대인의 건물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내부공사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동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1. 화재보험 계약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둘 이상으로 완전 방화구획이 되었거나 또는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중 일부분만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키행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내부공사 부분을 자기계정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공사내역 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그 명세서를 임대인의 건물화재보험 계약에 명기, 증액조치하고 화재시 그 부분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 소유지분을 보험증권상에 확실하게 기재하여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

〈질의자 : 한국주택은행 관재부 · 응답자 : 기획조정실〉

설마설마 방심말고
조심조심 불조심